

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1월 7일

양 구 군



1. 사 업 명 :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
2. 사업(대지위치) :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337-10번지
3. 도로위치 :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337-10(1필지)
4. 도로길이 : 191m
5. 도 로 폭 : 4m
6. 도로면적 : 936㎡
7.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

소 재 지	지 번	지 목	면 적				소 유 자	비 고
			공부면적 (㎡)	길이(m)	너비(m)	면적(㎡)		
양구군 양구읍 정림리	377-7	전	936	191	4	936	김*자	도로 지정동의
							김*환	
	1필			191		936		